

군산시 공고 제2012-1552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바,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 모성보호 시간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출산 장려 및 안정적인 자녀양육에 일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중인 공무원에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 제공 - 안 제21조제4항

- 임신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음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8월 21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전화 450-6120, 팩스 450-45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총무계(전화 450-6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항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21조(특별휴가) ①·② (생략)</p> <p>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p> <p>④·⑤·⑥·⑦ (생략)</p>	<p>제21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② ----- -----</p> <p>있으며, 임신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④·⑤·⑥·⑦ (현행과 같음)</p>

군산시 공고 제2012-1605호

공 고 (안)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육시설” 또는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
(안 제2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보육시설장” 또는 “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명칭 변경
(안 제2조,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9조)
- “보육시설종사자” 또는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 변경
(안 제2조, 제3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안 제15조제1항)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여성아동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전화063-450-4388, 팩스063-452-947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지원계(전화 063-450-4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이라 함은”을 ““어린이집”이란”으로 “시설”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을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를”을 “직원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육시설 종사자는”을 “어린이집 직원은”으로 “시설”을 “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를 “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린이집의 원장

제5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제3호, 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제5호 중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제6호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위탁”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보육시설의 설치)”를 “(어린이집의 설치)”로 하고 제1항과 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야간보육(24시간제)시설”을 “시간연장(24시간)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의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제2항의 “시설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시장은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또는 변경위탁 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 중 “시설기준”을 “기관기준”으로 “종사인원”을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시설물”을 “건물 및 기타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시설”을 “건물”로 “증설”을 “추가”로 “시설”은을 “해당부지 또는 건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물”을 “해당부지 또는 건물”로 한다.

제18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제1항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하고 제2항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는 시설장”을 “보

육교직원은 원장”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장의 번호를 제4장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본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1호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급여”로 하며, 제3호 “인건비”를 “급여”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6호 “보육시설(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일련번호를 삭제하고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3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장의 번호를 제5장으로 한다.

제7장의 번호를 제6장으로 한다.

제25조 제목“(보육종사자의 재교육 등)”을 “(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등)”으로 하고, 본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생 략) 3. “<u>보육시설</u>”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생 략) 5. “<u>보육시설종사자</u>”라 함은 보육 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 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u>보육시설</u>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u>보육시설의 장</u> 및 <u>보육교사</u>와 그 밖의 <u>종사자</u>를 말한다. <p>제3조(책임) ① (생 략)</p> <p>② <u>보육시설 종사자</u>는 군산시(이하“시”라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어린이집</u>”이란----- ----- 기관-----. 4. (현행과 같음) 5. “<u>보육교직원</u>”이란 <u>어린이집</u>----- ----- -----<u>어린이집</u>----- ----- <u>어린이집의 원장</u>----- -----<u>직원을</u>-----. <p>제3조(책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어린이집 직원</u>은 ----- ----- -----<u>기관</u>----- ----- -----.</p>

연 행	개 정 안
3. <u>보육시설</u>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3. <u>어린이집</u> ----- -----
4. <u>보육시설의</u>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3. <u>어린이집</u> ----- -
5. <u>보육시설</u>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u>어린이집의</u> 원장----- ----- -
6. 수탁기관의 종료 및 위탁계약이 해지된 <u>국·공립보육시설</u> 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2. ----- ----- <u>국·공립어린이집</u>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3장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	제3장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위탁
제12조(보육시설의 설치) ① <u>국·공립보육시설</u> 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집의 설치) ① <u>국·공립어린이집</u> ----- ----- ----- ----- ----- ----- ----- ----- -----
② 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u>국·공립보육시설</u> 에 장애아 보육시설, <u>야간보육(24시간제)시설</u> 을 설치할 수 있다.	②----- <u>국·공립어린이집</u> ----- <u>어린이집</u> , <u>시간연장(24시간)어린이집</u> ----- -----.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u>시설기준</u> 및 <u>종사인원을 확보·유지</u>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u>국·공립보육시설</u>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모든 <u>시설물</u>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③ 수탁자가 새로운 <u>시설</u>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u>시설</u>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등 재산권은 시에 귀속되며 이와 관련된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시 주무부서의 지시와 요구에 따른다.</p> <p>④, ⑤ (생략)</p>	<p>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 ----- -----<u>기관기준</u>----- <u>보육교직원</u>-----.</p> <p>②----- <u>국·공립어린이집</u>----- ----- <u>건물 및 기타재산</u>----- -----.</p> <p>③-----<u>건물</u>-----<u>추가</u>----- ----- ----- -----<u>해당부지 또는 건물</u>----- ----- ----- -----.</p> <p>④, ⑤ (현행과 같음)</p>
<p>제17조(위탁의 취소) ① (생략)</p> <p>1. (생략)</p> <p>2. 수탁자가 공익상 <u>보육시설</u>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p>	<p>제17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u>어린이집</u>----- -----</p>

현행	개정안
<p>3.~5. (생략)</p> <p>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는 경우 시설물 기타 재산을 지체 없이 시에 인도하여야 한다.</p>	<p>3.~5. (현행과 같음)</p> <p>②----- ----- -----<u>해당부지 또는 건물</u>----- ----- -----.</p>
<p>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u>보육시설</u>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p>	<p>제18조(손해배상) ----- -----<u>어린이집</u>----- ----- ----- -----.</p>
<p>제19조(종사자) ① <u>보육시설의 시설장</u> 및 보육교사는 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p>	<p>제19조(보육교직원) ① <u>어린이집-원장</u>----- ----- -----<u>보육교직원</u>은----- ----- -----.</p>
<p>② 위탁운영 <u>보육시설의 시설장</u>은 수탁자가 임면(任免)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면(任免)사항을 군산시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u>어린이집의 원장</u>----- ----- -----<u>보육교직원</u>은-----<u>원장</u>----- ----- -----.</p>

연 행	개 정 안
<p>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비 용</p> <p>제21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계규정에 의거 설치인가를 받은 <u>보육시설</u>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u> 2. (생략) 3. 시간연장 <u>보육교사 인건비</u> 4. <u>보육시설 운영비</u> 및 <u>교재교구 제작, 구입, 개발</u> 등의 소요비용 5. <u>보육시설의 설치 및 증·개축 및 개보수비</u> 6. <u>보육시설(정부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u> 및 <u>냉난방비</u> 	<p>제20조(지도·감독) ① ----- -----<u>어린이집</u>----- ----- -----.</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비 용</p> <p>제21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 ----- -----<u>어린이집</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급여</u> 2. (현행과 같음) 3. 시간연장 <u>보육교사 급여</u> 4. <u>어린이집</u>----- ----- -- 5. <u>어린이집</u>----- ----- 6. <u>어린이집</u>----- -----

연 행	개 정 안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u>보육시설</u>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7. ----- <u>어린이집</u> ----- ----- -----
제22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u>보육시설</u> 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료 및 방과 후 아동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1.~5. (생 략)	제22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항 일련번호 삭제) --- <u>어린이집</u> --- ----- ----- ----- 1.~5. (현행과 같음)
제2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보육시설</u> 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3. (생 략)	제2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 ----- ----- <u>어린이집</u> ----- ----- ----- -. 1.~3. (현행과 같음)
제6장 보육수요조사 및 보육 계획 수립 · 시행 제7장 보칙	제5장 보육수요조사 및 보육 계획 수립 · 시행 제6장 보칙
제25조(보육종사자의 재교육 등) 시장은 <u>보육시설종사자</u> 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등) --- <u>어린이집 보육교직원</u> --- ----- ----- -----

군산시 고시 제2012-84호

대야면 광고리 광고경지정리사업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에 따른 지적
도근점(28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일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BESSEL		GRS 80				토지소재	설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평면직각 중형선수치				표고 (m)	위도				경도
명칭	번호	원점명	X(m)	Y(m)	X(m)	Y(m)						
지적 도근점	51866	중부	271499.57	183556.51	371806.196	183628.939	5.94	35°56'37.1"	126°49'06.8"	대야면 산월리 981-3	12.2.27	토지정보과
"	51867	"	271258.33	183425.86	371564.955	183498.295	6.57	35°56'29.2"	126°49'01.6"	대야면 복교리 1325-31	"	"
"	51868	"	271319.04	183831.89	371625.680	183904.321	5.00	35°56'31.2"	126°49'17.8"	대야면 산월리 981	"	"
"	51869	"	271214.76	184087.14	371521.402	184159.570	6.88	35°56'27.8"	126°49'28.0"	대야면 복교리 570-10	"	"
"	51870	"	271302.98	184282.68	371609.626	184355.109	5.90	35°58'06.4"	126°43'35.5"	대야면 복교리 1325-28	"	"
"	51871	"	271079.58	184530.95	371386.236	184603.378	5.26	35°56'23.5"	126°49'45.7"	대야면 복교리 564-14	"	"
"	51872	"	271208.55	184707.82	371515.208	184780.252	5.53	35°56'27.7"	126°49'52.7"	대야면 복교리 1325-56	"	"
"	51873	"	271049.46	184820.98	371356.114	184893.411	3.85	35°56'22.5"	126°49'57.2"	대야면 복교리 551-2	"	"
"	51874	"	270848.51	184781.18	371155.173	184853.615	4.49	35°56'16.0"	126°49'55.7"	대야면 복교리 1325-114	"	"
"	51875	"	270850.54	184523.40	371115.194	184595.834	5.07	35°56'16.1"	126°49'45.4"	대야면 복교리 566-15	"	"
"	51876	"	270861.43	184358.39	371168.076	184430.827	4.08	35°56'16.4"	126°49'38.8"	대야면 복교리 566-17	"	"
"	51877	"	270869.21	184161.90	371175.853	184234.336	4.70	35°56'16.6"	126°49'31.0"	대야면 복교리 573-32	"	"
"	51878	"	270880.08	183939.00	371186.721	184011.441	4.89	35°56'17.0"	126°49'22.1"	대야면 복교리 581-31	"	"

지적측량기준점			BESSEL		GRS 80				토지소재	설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평면직각 중형선수치				표고 (m)	위도				경도
명칭	번호	원점명	X(m)	Y(m)	X(m)	Y(m)						
지적 도근점	51879	중부	270640.36	183962.52	370947.006	184034.968	5.49	35°56'09.2"	126°49'23.0"	대야면 복교리 1325-47	12.2.27	토지정보과
"	51880	"	270629.69	184182.02	370936.338	184254.460	5.26	35°56'08.9"	126°49'31.8"	대야면 복교리 576-4	"	"
"	51881	"	270624.16	184514.53	370930.820	184586.974	5.06	35°56'08.7"	126°49'45.0"	대야면 복교리 568-43	"	"
"	51882	"	270638.59	184748.55	370945.250	184820.986	5.07	35°56'09.2"	126°49'54.4"	대야면 복교리 559-10	"	"
"	51883	"	270433.42	184133.87	370740.069	184206.313	5057	35°56'02.5"	126°49'29.9"	대야면 복교리 1325-7	"	"
"	51884	"	270557.49	184508.32	370864.149	184580.762	4.57	35°56'06.5"	126°49'44.8"	대야면 복교리 568-35	"	"
"	51885	"	270409.77	184614.38	370716.425	184686.830	5.01	35°56'01.8"	126°49'49.0"	대야면 복교리 398-22	"	"
"	51886	"	270268.52	184728.93	370575.178	184801.377	4.69	35°55'57.2"	126°49'53.6"	대야면 복교리 399-1	"	"
"	51887	"	270070.49	184671.36	370377.149	184743.811	4.16	35°55'50.8"	126°49'51.3"	대야면 복교리 1325-72	"	"
"	51888	"	269971.64	184386.86	370278.297	184459.312	4.86	35°55'47.5"	126°49'40.0"	대야면 복교리 401-17	"	"
"	51889	"	269739.02	184493.05	370045.684	184565.515	5.19	35°55'40.0"	126°49'44.3"	대야면 복교리 445-2	"	"
"	51890	"	269855.94	184734.35	370162.602	184806.804	4.36	35°55'43.8"	126°49'53.9"	대야면 복교리 402-17	"	"
"	51891	"	269633.22	184768.51	369939.891	184840.976	4.33	35°55'36.6"	126°49'55.2"	대야면 복교리 404-16	"	"
"	51892	"	269296.30	184851.92	369602.972	184924.392	4.25	35°55'25.6"	126°49'58.6"	대야면 복교리 408-12	"	"
"	51893	"	269041.60	184945.65	369348.278	185018.126	5.23	35°55'17.4"	126°50'02.4"	대야면 복교리 411-6	"	"

군산시 고시 제2012-86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소방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소방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7월 27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군산시 사정동 17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소방서)
 - 2) 명 칭 : 군산소방서 차고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5,201㎡
 - 1) 건축면적 : 당초 1,204.39㎡ ⇒ 변경 1,274.89㎡ (증 70.5㎡)
 - 2) 연 면 적 : 당초 3,897.69㎡ ⇒ 변경 3,968.19㎡ (증 70.5㎡)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1) 사업시행자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효자동 3가 1번지)
 - 2) 사업시행자 성명 : 전라북도지사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7. ~ 2012. 10.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1	사정동	171	대지	5,201	5,201	군산시				
	합계		1필지		5,717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2-8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7. 27.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지역주택조합

1) 명 칭 : 군산2차 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2) 대표자 : 전 윤 권

3) 주 소 : 군산시 수송동 852-2번지, 청담빌딩 4층

나. 공동사업주체

1) 회사명칭 : 현대엠코주식회사

2) 대 표 자 : 손 효 원

3)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3.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17번지의외 34필지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나. 대지면적 : 20,480.00m²

다. 건축면적 : 3,312.22m²

라. 연 면 적 : 65,859.77m²

마. 건축규모 : 아파트 4동 24~26층, 449세대

- 전용 84.9838m² 403세대

- 전용 84.9848m² 46세대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 업 비 : 68,193,293천원

아. 사업기간 : 2012. 08 ~ 2014. 11.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주택법 제17조 1항에 의한 고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0-4228)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2-89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및 관련지번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 및 변경된 관련지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1. ~ 8. 15.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81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15건

지번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10건

종전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별 도 열 람				

○ 관련지번 변경 : 68건

도로명주소	변경된 지번주소	종전 지번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0-6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1535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제6회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결정·공시합니다.

2012. 7. 20 .

군 산 시 장

1. 이의신청 개요

가. 공시기준일 : 2012년 1월 1일

나. 개별 단위 면적 : m²

다. 개별필지별가격 : 원

라. 조정결정 필지수 : 22필지 (내역붙임)

마. 공 고 사 항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2. 개별공시지가 열람장소 : 시청(토지정보과)

3. 이의신청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 (☎ 454-3992,3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1541호

의료법인설립공고(안)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료법인 설립을 허가 하였기 공고합니다.

2012년 07월 23일

군 산 시 장

법인설립공고사항

- 허가 번호 : 제 군산의료법인 2012-1호
- 허가 년월일 : 2012년 07월 20일
- 명 칭 : 의료법인 원광아리울의료재단
- 대표자(이사장) : 오 성 배 (620324-1*****)
- 소재 지 : 군산시 조촌4길11(조촌동)
- 목 적 :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운영 하고 요양환자 치료로 의료서비스와 복지가 결합된 의료시설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
- 조 건 : 의료법 및 민법 등 관련 규정 준수
- 근 거 : 의료법 제48조, 민법 제32조

군산시 공고 제2012-1544호

임대조건(변경)신고 공고

201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중 임대주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임대조건(변경)신고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7. .

군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7. . ~ 2012. 8. .

2. 타워써미트

임대사업자	성 명 황 의 철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210114 - 0018115
	상 호 (유)송정건설	전화번호	063-251-5201
	주 소 (사무소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군산시 조촌동 244-3번지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 (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 조건	59.9438㎡	129	41,000	37,316천원	371천원	59,700천원	200천원	
	84.9622㎡	277	61,000	50,797천원	579천원	81,270천원	300천원	
	84.9940㎡	173	61,000	50,850천원	579천원	81,270천원	300천원	
	84.9126㎡	191	61,000	51,533천원	583천원	82,270천원	300천원	
	합 계	770						
임대차 계약기간		2012년 6월 ~ 2013년 6월						
분양전환시기		: 5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1조						

3. 나운주공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조건변경신고)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윤여공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35671-0033355			
	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전화번호	063-840-0912		
	주소 (사무소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57-4번지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군산시 나운동 45번지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26.37㎡	1,074	불 임				(변경전)
	31.32㎡	447	불 임				(변경후)
	합 계	1,521					(변경전)
							(변경후)
	임대차 계약기간	변경전 2011년 7월 1일 ~ 2013년 6월 30일			변경후 2012년 7월 1일 ~ 2013년 6월 30일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되지 않는 영구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군산시 공고 제2012-1603호

2012/2013년도 어업면허 처분 공고

2012/2013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어업면허 처분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30

군 산 시 장

○ 어업면허 처분 사항

어업의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면적	면허기간	어장위치	면허처분일	어업권자
해조류양식	부류식	5596	203	2012. 7. 30 ~ 2022. 7. 29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해역	2012.7.30	개야도 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해조류양식	부류식	5597	25	2012. 7. 30 ~ 2022. 7. 29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해역	2012.7.30	개야도 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마을어업	-	5264	45	2012. 7. 30 ~ 2022. 7. 29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해역	2012.7.30	개야도 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끝.